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자녀사랑보장플랜보험

나. 보험의 종류

구 분	보험의 세목	
주계약	1종(보장플랜)	1형(중도급부형)
		2형(80% 만기환급형)
	2종(기본플랜)	1형(중도급부형)
		2형(80% 만기환급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주기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27세만기	5년납, 10년납, 24세납, 전기납	0세(태아포함) ~ 14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5년납	0세(태아포함) ~ 12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태아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경우 무배당 산모보장특약 및 무배당 주산기입 원보장특약을 가입금액 최저 1,000만원부터 2,000만원 한도로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

다만, 태아가 복수임을 알았을 때 기체결된 동일한 보험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라도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을 얻어 추가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산모보장특약을 부가하지 아니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다자녀 가구 할인)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3인인 경우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0.5%를 할인한다.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4인 이상인 경우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계산하며 할인율은 표준이율로 계산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태아가입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은 태아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태아의 가입은 임신사실 확인 후부터 임신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 나. 태아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경우 보험료는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 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태아의 출생시 보험계약일을 출생일로 변경하며, 변경된 보험계약일 전까지 납입된 보험료는 변경된 보험계약일 이후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 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며,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14. 기타

- 가. 이 보험의 경우 1구좌당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나. 만기고객 종신보험 가입 특전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종신보험으로 가입 시 산출된 주보험의 영업보험료의 1.0%을 할인하여 영수한다.
-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